

©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  
정책국장 최윤배(6530)/ 정책팀장 박우민(6532)/ 대리 김철욱(6535)/ E-mail: [leo0817@kma.org](mailto:leo0817@kma.org)

문서번호 대의협 제625-673호

시행일자 2017. 4. 27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3233(2017.4.19.)

3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2017.4.19.자로 「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 고시한 바, 불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

2.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1부. 끝.

## 대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※ 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
(각과개원의협의회장)